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6. . . (제 회)	

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교육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6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초·중등교육법」 개정('26.4.28.)에 따라,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 학교민원 제기 과정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 또는 업무방해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필요한 학교의 장 조치에 관해 시행령으로 규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(안 제65조 신설)

- 가. 사유의 고지, 행위의 중지 요청 등 학교의 장 조치 전에 필요한 절차 사항 규정(제1항)
- 나. 학교민원을 제기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필요한 학교의 장 조치 사항을 규정(제2항)
- 다. 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보호 및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즉시 제2항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(제3항)
- 다. 교직원 또는 학교민원대응팀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한 규정(제4항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이견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4조 다음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절 학교민원 대응

제4장제3절에 제6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5조(퇴거요청 등 조치 절차) ① 학교의 장은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 학교민원 제기 과정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 또는 업무방해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고지하고 해당 행위의 중지를 요청하여야 한다.

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학교민원을 제기하는 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 중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1. 전화·면담 등 민원 응대의 종료
2. 퇴거 요청
3. 수사기관에의 신고, 고발 또는 협조 요청
4. 일시적 출입 제한
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보호 및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고지 및 요청 없이 즉시 제2항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
④ 학교의 장은 소속 교직원 또는 학교민원대응팀을 통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영은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 신 설 > < 신 설 >	<u>제3절 학교민원 대응</u> <u>제65조(퇴거요청 등 조치 절차)</u> <u>① 학교의 장은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 학교민원 제기 과정에서 교육 활동 침해행위 또는 업무방해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고지하고 해당 행위의 중지를 요청하여야 한다.</u> <u>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학교민원을 제기하는 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 중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</u> <u>1. 전화·면담 등 민원 응대의 종료</u>

2. 퇴거 요청

3. 수사기관에의 신고, 고발 또는
협조 요청

4. 일시적 출입 제한
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
장이 교육활동 보호 및 정상적인
업무 수행을 위해 긴급하다고
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
고지 및 요청 없이 즉시 제2항
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④ 학교의 장은 소속 교직원 또는
학교민원대응팀을 통하여 제1항
부터 제3항까지의 조치를 할 수
있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교육부 교원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3 - 6498